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4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63”을 “360”로 하고, 일반직 계 “362”를 “3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2”를 “34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20”을 “4,887”로 하고, 일반직 계 “4,920”을 “4,8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38”을 “4,505”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삭제	
2)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2명
3) 삭제	
4)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0명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3</u>	<u>360</u>	-3
•	•	•	
•	•	•	
일반직 계	<u>362</u>	<u>359</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52</u>	<u>349</u>	-3
•	•	•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920</u>	<u>4,887</u>	-33
일반직 계	<u>4,920</u>	<u>4,887</u>	-3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38</u>	<u>4,505</u>	-3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